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

제출년월일 : '96. 12.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1996년 2월 5일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공포되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가 1996년 7월 1일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를 이에 맞추어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서초구 내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다. 종량제 일반 규격봉투를 음식물 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분리·배출도록하고, 사업장용 봉투가격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를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제13조)

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67500-1075('96. 8.13)호에 의거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 정비에 따른 참고자료 통보 사항임

라.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시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음식물을 조리 또는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재거 및 건축·토목등의 공사과정에서 1회에 1톤 이상이나 1주에 1톤 이상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등 “별표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초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구청장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서초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음식폐기물등 모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서초구내의 토지·건물을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자는 토지·건물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구격봉투(이하 “구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구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구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없는 연탄재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등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
 2.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폐기물 처리업의 지도 감독

제10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2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 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 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및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종량제 폐기물중 음식폐기물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고, 나머지 종량제 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 ⑥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가정용 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특수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 ⑦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6조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가능한 한 당일 해당 동사무소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고, 인수한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음식물전용봉투·가정용봉투·영업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골목길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음식폐기물 제외)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차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화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기타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제22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활동장으로부터 교환사유 및 교환수량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교환 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④ 봉투판매인은 동장이 발부한 교환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3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 처리 시설에의 반입 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는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 ③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 하는 반입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매월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가산금 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봉투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초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세 이자율을 준용한다.

- ②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채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구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기급한다.

제 6 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 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청문)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집 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반입수수료·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 : 원)	품 목 별	규 격	부과금액 (단위 : 원)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신 발 장		2,000
	300ℓ 이상	6,000	문 갑		3,000
	300ℓ 미만	4,000	화 장 대		3,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장 식 장		4,000
	12인치이상	3,000			
세탁기		3,000	옹 접 셋 트	장 의 자 의 자	5,000 2,000
				1 인 용	10,000
에 어 콘	264m ² 형 이상	8,000	침 대	1인용메트리스	5,000
	66m ² 형 이상	5,000		2 인 용	15,000
	66m ² 형 미만	3,000		2인용메트리스	8,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캐 비 넷		4,000
	높이 1m미만	2,000			
탈 수 기		2,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2,000	양 수 책 상		7,000
장 농	120cm장 1쪽	15,000	편 수 책 상		4,000
	90cm장 1쪽	10,000			
서 랍 장	5단 이상	4,000	파 아 노		15,000
	4단 이하	2,000			
쌀 통		3,000	올 겐		4,000
선풍기	가 정 용	1,500	난 로		2,000
유 모 차		2,000	자 전 거	성인용 (2발)	3,000
				아동용 (2발)	3,000
				아동용 (3발)	2,000

(주)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 이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녹색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함 - 반듯하게 퍼서 차곡차곡 쌓아서 봉을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포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파를 제거후 압착하여 윤번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음, 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것 ※ 매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배출
4. 고 철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불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굳으로 묶어서 별도배출 - 위와같음
5. 플라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류 재질 식별 표도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p style="text-align: right;">※ 폐유용기류는 제외</p>

	· 폐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불질 및 부착상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파일, 생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전자제품의 완충용 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가 회수 ※ 제외대상-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수신양식용 폐부자- 이불질이 묻은 것-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	---------	--

[별표 3]

규격봉투가격 (제14조 제2항 관련)

(일반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3 ℥	50			
5 ℥	70	70		
10 ℥	140	140		
20 ℥	290	270	290	
30 ℥		400	440	
50 ℥	730	600	730	990
75 ℥			1,090	1,470
100 ℥			1,450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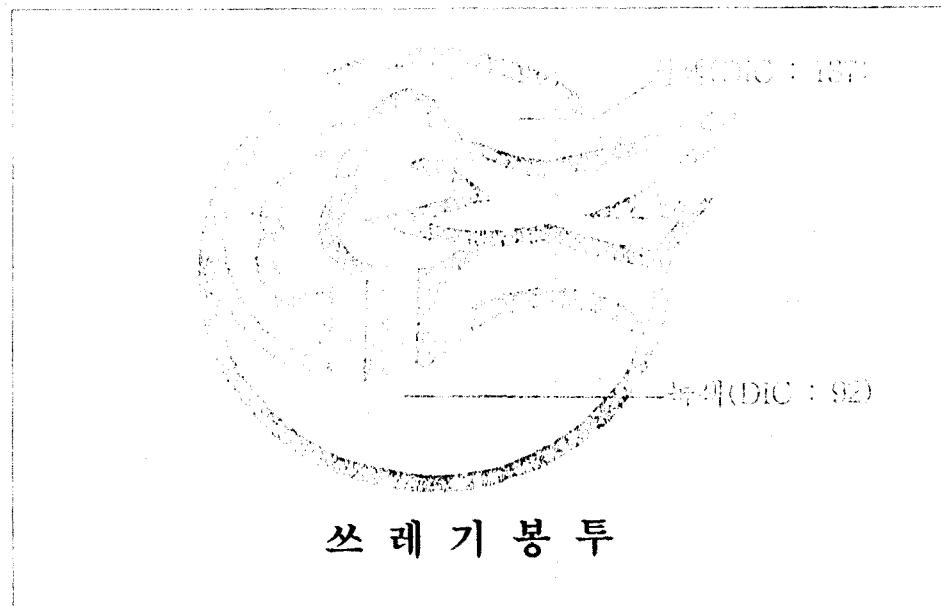
(특수 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구 분	가정용	사업장용	비 고
50 ℥	750	1,080	

[별표 4]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점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
 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제27조 관련)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금액 (단위 : 원)	비 고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압축 폐기물	m ³ 당	14,420		
	미 압축폐기물	m ³ 당	5,050		
	농수산 폐기물	m ³ 당	8,150		
	음식 폐기물	m ³ 당	12,150		
건설폐기물		톤당	14,470		

- 비고 : 1.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가감 함.
2. 사업장생활폐기물중 농수산폐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보관·운반
및 판매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배출처에서 다른 폐기물과 완
전 구분되어 독립된 수집·운반체계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
3. 법 제15조제1항, 법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스스로 수
집·운반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매립
지에서 계량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반
입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인 통지용)

(수납은행보관용)

(구청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제 호 과태료납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제 호 영수편통지서		
위반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위의 과태료는 폐기물관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수납일부인

구청장

구청장

[별지 제2호의 2서식]
(갑)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일시	내용			
위법률 폐기물관리법 제7·15조	의견진술기간	까지	의견진술장소	
위반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년	월	일

[특기사항]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번식을 부착 인쇄
- 서식 접·을 및 병·성·무를 각각 복사용 복지 부착인쇄

(인쇄용지 | 특금 | 34g/m²)

(24)

(광 차분자 통지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과 계 낸 도		세 입 과 농		개 치 낸 호	
위 반 행 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위 반 사 실 일 시		내 용		까지	납 부 장 소
위 반 법 률	폐기물관리법 제7·15조	의 견 진술 기간		까지	의 견 진술 장 소
위반 행위자 서명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실에 의한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차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달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을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 초 구 청 장

년

월

일

168mm x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

(수납은행보관용)

【과태료 납부서】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계좌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까지	납 부 장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 날자 도장

서초구청장

(인쇄 용지 [특급] 168mm x 118mm
34g/m²)

(3)

(개인·통신용)

【과태료 납부영수증】

회계년도		세입과목		체적번호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주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 날짜 도장	취급자 인
----------	-------

(인쇄용지 | 특금 | 34g/m²)
168mm x 118mm

(무)

(구청 통보용)

【과태료 납부영수증통지서】

처 치 번 도	세 입 과 목		처 치 번 호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이
영
수

수납은행 :

수납 날자 도장

서초구청장귀하

(인쇄용지 168mm x 118mm
1쪽짜리 34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과태료 처분내역	① 성명 ③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④ 부과 기준 ⑤ 고지받은일자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⑦ 과태료 금액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초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서초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① 일련 번호	② 통지 서번호	③ 과태 분 금지일	④ 독축장 별부일	⑤ 당초 별부일	⑥ 독축 명	⑦ 금 액	⑧ 성 명	⑨ 주 소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통보일